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COVID-19 상황에서도 성황인 美 APA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은 지난 3월 30일, 상호 합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비록 COVID-19의 영향과 관련된 IRS의 입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COVID-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IRS가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를 종전과 같이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APA가 납세자의 이전가격 위험을 해소함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 APA 현황

2020년 중 접수된 APA 신청서는 직전년도와 동일한 총 121건으로 이 중 15건은 일방 APA, 103건은 쌍방 APA, 그리고 나머지 3건은 다자간 APA로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된 쌍방 APA의 상대국가는 일본(41%), 인도(11%), 캐나다(10%), 독일(7%) 순이었습니다. 2020년 IRS는 전년 대비 7건 늘어난

삼정 KPMG

TAX 6 본부

24 May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127건의 APA를 종결하였습니다. 종결된 쌍방 APA의 상대국가 중 일본 (52%)이 가장 많았습니다. COVID-19의 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회담 등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종결된 APA건 중 쌍방 APA의 경우 신규 및 갱신 신청 건은 타결까지 각각 평균 43.7개월 및 30.3개월이 소요되어 전년 대비 각각 2.2개월, 8.4개월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IRS의 APA 담당인력 확충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가 APA에 미치는 영향

APA 연례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COVID-19의 유행이 APA의 처리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렵고 독특한 이전가격 이슈를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APA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IRS는 2020년 5월 11일 발간한 자료를 통해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이슈를 조약 파트너 국가들과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불황기와 특정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이전가격분석방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IRS는 납세자가 현재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자체적인 이전가격정책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와 AP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증빙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업 전반적인 이익률 변화, 공장 가동 중지, 정부 보조금 등 COVID-19의 이전가격에 대한 영향을 우선 분석하여 일반적인 영업 상황에서의 기타 요인들과 비교·분석한 내용을 IRS에 제시하여야 원활한 APA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세정책의 잠재적 영향

COVID-19로 인해 미국 내 조세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PA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구제계획법의 입법과 인프라 재건 계획 등의 입안 등을 통해 각종 경제부양 정책과 법인세 증세 및 세액공제 감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IRS 운영자금 증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내 조세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APA를 통해 특수관계자간 국제 거래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글로벌 세제 환경에 대한 고려

2018년 이래로 국가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관세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며 또한 OECD의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의 논의가 다국적기업들이 관계사간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조세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이 처한 세수부족으로 인해 각 과세당국들의 공격적인 이전가격 과세 경향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납세자에게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결론

COVID-19의 전 세계 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이전가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하였고, 조세 갈등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A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IRS가 APA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타결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좋은 선택지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EU의 조세 블랙리스트

1997년 12월 결성된 EU의 행동강령그룹(Code of Conduct Group, 이하 "CCG")은 회원국에 유해한 세금 감면 경쟁을 막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국적 납세자들에 대한 투명성 준수 규정에 부합하는 더욱 투명한 정책을 집행하고자 EU 회원국들의 경쟁적인 세금 감면 정책의 채택을 저지하고 EU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CG의 구성원 및 중요성

CCG는 EU 회원국과 EU 위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지침서를 발간하고 EU 회원국들의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를 2017년 12월부터 발표해 온 CCG는 조세 투명성, 공정 과세, OECD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방지 규정의 최소 기준 시행 여부, 이 세 기준에 따라 조세 비협조국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비공개 방식의 회의로 블랙리스트 국가를 선정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선정 및 변경 근거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세 블랙리스트의 의미

연 2회 업데이트 되는 조세 블랙리스트는 조세 사기·회피, 절세 및 자금 세탁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EU 비회원 국가 중 조세혜택을 남용하여 EU 회원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국가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며, 이는 EU 회원국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일례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블랙리스트 등재 국가의 (1) 이자 및 로열티 비용의 공제 적용 불가, (2) 국가간 거래 공개, (3) DAC6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에 따른 특정 국경 간 약정의 의무 공개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2월에 업데이트된 최신 블랙리스트 등재 국가로는 사모아, 안구야, 도미니카, 피지, 괌, 팔라우, 파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버진아일랜드, 바누아투, 세이셸 제도 등이 있습니다.

조세 블랙리스트 선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CCG는 블랙리스트 선정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중 부과세 또는 감세 여부
- 경제 활동의 거주지에 실질적인 영향 행사 여부
- 위 두 기준 사이의 인과 관계 존부

이를 통해 검토대상 국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블랙리스트 국가에 대한 EU의 보호 조치를 일원화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OECD Pillar 2의 글로벌 최저한세 안을 고려하여 법인세율이 0%인 국가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목해야 할 점

국제조세 변화, 조세 투명성, OECD의 디지털·글로벌 최저한세 안, 독립기업원칙 논의 및 최근 몇 년간의 발전 등은 모두 이해당사자들이 CCG의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시류 변화에 발을 맞추기 위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미 이해관계자와 CCG 회원국의 자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합의가 일부 부문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될 새로운 수준의 투명성은 향후 블랙리스트에 대한 CCG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졌던 방법론이

점점 투명한 과정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변화로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2. 관세 Update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

지난 2019년 8월에 최종 타결되었던 한-이스라엘 FTA에 양국이 2020년 5월 12일 (수)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는 상품 및 기술협력 분야입니다.

상품분야

상품분야에서는 한국 기준 대(對)이스라엘 수출물품인 자동차(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이스라엘 시장에서의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는 수입 관세 3년 이내에 단계 철폐를 합의하였습니다. 동 합의안은 두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증가하는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수입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 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에 대해선 철폐 기간을 확보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번 서명으로 현재 미국과 EU에 편중된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며 특히 대(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술협력분야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입니다. 이에 당국은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의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협력을 증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 강국인 이스라엘과 창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고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

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협력 활동을 강화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분야의 합의는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업 기반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는 등 신성장 동력의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정부는 한-이스라엘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EU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생산 문제 해결 논의

미국의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는 미국 현지 시간 2021년 5월 17일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 및 아시아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여 다음달부터 유럽 연합이 철강과 버번위스키 등 28억 유로(약 3조 8,7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50% 인상하려 했던 보복 조치 또한 그 시행이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본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동맹국과의 전략적인 연대를 확대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무역교란행위를 견제할 것이란 의견을 표명해왔기에 금번 성명은 예측 가능했던 행보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조가 보호무역주의의 해소를 의미하기보단 강력한 동맹국 중심 보호주의로 변모한 형태의 패권 싸움과 신규 무역 규제 조치를 낳을 수 있어 보이므로 Supply Chain 등에의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이 권고됩니다.

3. OECD Update

[아시아경제] 정부, 디지털세 과세 대상서 반도체 제외 추진

정부 '반도체·화장품·식료품' 소비자 대상 사업서 제외 목표

최종 합의안, 오는 7월 도출 예상..."각국 입장 첨예하게 대립해 진통 예상"

정부가 주요 20개국(G20)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서 반도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더라도 IT나 제조업체가 수익을 얻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만큼은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강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촉발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정부에 법인세 과세권을 제시하는 내용의 '필라(pillar)1'에 소비자 대상 기업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에 파급력이 큰 만큼 지켜야 할 핵심산업"이라면서 "이뿐 아니라 수익 비중이 높은 화장품, 식료품업 역시 최대한 제외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9년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논의하면서 디지털·정보기술(IT)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체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정하는 '필라2'라는 골격을 만든 바 있다. G20은 이 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틀대로라면 네이버, 카카오, 게임업계를 비롯해 대기업들도 과세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

정부의 선택은 미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한국 반도체 시장 상황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이 될 경우 투자 여력이 떨어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각국이 주력 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합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회원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은 금융업을, 유럽은 제약업을 제외하려는 상황이다. G20 회원국 사이에서 '반도체'는 소비자 대상 기업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반도체를 제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국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실제 합의가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반도체 중 일부 제품만 포함하는 식의 접근법도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파는 반도체 제품은 포함되더라도, 컴퓨터 안에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 경우엔 소비자 직접 제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제품의 가격 중 반도체 부품이 50% 이상을 차지하면 소비재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직접 제공 상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디지털세 논의의 또 다른 축인 필라2가 작동할 경우 기업들의 국내 추가 세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이 OECD 9위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저세율국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의 경우엔 국내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걸히면서 세수는 증가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라 2는 논리상 미달하는 세액만큼 모회사 소재지에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오는 7월까지 디지털세 도입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